

변리사시험 1차 대비

TRADE MARK LAW

상표법

서브집 핸드북

제1판

변리사 조현중

ㅎ ㅍ ㄹ ㅈ ㅊ ㅌ ㅍ

변리사스쿨

PREFACE

본 교재는 주요 조문과 판례를 정리한 서브집입니다.

본 교재에는 강의에서 사용하는 약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약어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는 JHJ-GROUP.com으로
질문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많은 관심 가져주시는 독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대한의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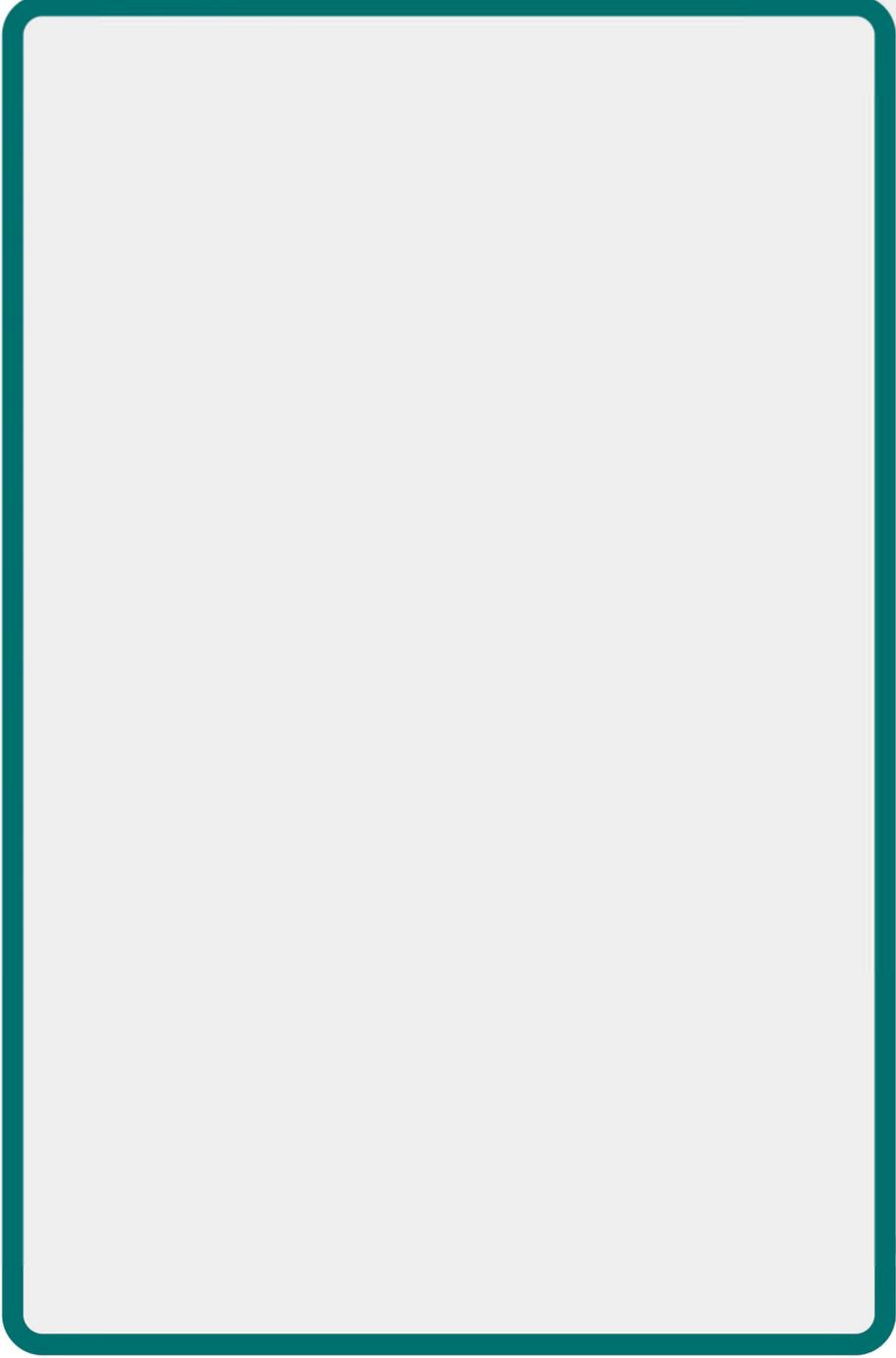
2024년 11월 25일

변리사 **조현중** 올림

CONTENTS

제01장	특유표장	2
제02장	상표의 사용	16
제03장	상표·상품의 동일·유사	21
제04장	절차총칙	24
제05장	거절이유	28
제06장	출원 절차	46
제07장	심사 및 출원공고	50
제08장	상표권	53
제09장	사용권 및 질권	60
제10장	배타권 침해	61
제11장	취소심판	69
제12장	무효심판, 권리범위확인심판, 기타	79
제13장	국제출원	83

TRADEMARK LAW 조항중



TRADEMARK LAW

상표법
서브집 핸드북

변리사 조 현 중

1. 내용 개괄

입체상표 → 색채만으로 된 상표 → 소리상표 → 냄새상표 → 위치상표 → 단체표장 → 지리적표시 → 증명표장 → 업무표장

2. 입체상표

가. 출원절차

(상표유형) 출원서 '상표 유형'란에 입체상표임 표시.

(상표견본) 상표의 일면 또는 여러 측면으로 구성하는 등 입체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제출.

(상표의 설명) 입체상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상표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표에 대한 설명서 제출.

구분 시행규칙 제28조	상표견본	상표설명	시각적 표현	첨부자료
일반상표(전형상표)	상표견본	임의	—	
입체상표	도면 또는 사진	임의	—	
색채만으로 된 상표	도면 또는 사진	필수	—	
홀로그램상표	도면 또는 사진	필수	—	
동작상표	도면 또는 사진	필수	—	전자적 기록매체
소리상표	—	필수	필수	소리파일
냄새상표	—	필수	필수	냄새견본
위치상표 (기타 시각적 상표)	도면 또는 사진	필수	—	

나. 식별력 심사

(판단기준)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시에는 입체적 형상뿐만 아니라 이와 결합된 구성요소도 관찰하여 표장 전체적으로 식별력 여부를 판단(2014후2306).

(입체적 형상만으로 된 표장의 경우) 입체적 형상이 그 지정상품 등의 통상적인 형상으로 인식되거나 일부 변형되었을 지라도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식별력이 없는 것으로 본다(2013후1146). 입체적 형상이 이례적으로 독특한 형태상 특징을 가지는 등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할 수 있는 정도라면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다(2013다84568). 입체적 형상이 지정상품 또는 그 포장 등의 형상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 제3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입체적 형상이 흔히 있는 구, 정육면체, 직육면체, 원기둥, 삼각기둥 등으로만 구성된 경우 제33

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입체적 형상에 기호, 문자 등이 추가로 결합된 표장의 경우) 입체적 형상이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더라도 입체적 형상에 식별력 있는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등이 결합된 경우에는 식별력이 있는 것으로 본다.

다. 입체상표, 색채만으로 된 상표, 소리상표, 냄새상표의 기능성 심사

(제34조 제1항 제15호) 상표등록을 받으려는 상품 또는 그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꼭 필요한(서비스의 경우에는 그 이용과 목적에 꼭 필요한 경우를 말한다) 입체적 형상, 색채, 색채의 조합, 소리 또는 냄새만으로 된 상표는 등록불가.

(제34조 제1항 제15호 취지) 상품 등의 기술적(技術的) 기능은 원칙적으로 특허법이 정하는 특허요건 또는 실용신안법이 정하는 실용신안등록 요건을 구비한 때에 한하여 그 존속기간의 범위 내에서만 특허권 또는 실용신안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데, 그러한 기능을 확보하는 데 불가결한 입체적 형상에 대하여 식별력을 구비하였다는 이유로 상표권으로 보호하게 된다면,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을 통하여 그 입체적 형상에 불가결하게 구현되어 있는 기술적 기능에 대해서까지 영구적인 독점권을 허용하는 결과가 되어 특허제도 또는 실용신안제도와 충돌하게 될 뿐만 아니라, 해당 상품 등이 가지는 특정한 기능, 효용 등을 발휘하기 위하여 경영자가 그러한 입체적 형상을 사용하여야만 할 경쟁상의 필요가 있음에도 그 사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자유로운 경쟁을 저해하는 부당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기 때문에 식별력(사용에 의한 식별력 포함)이 있더라도 기능성이 있는 경우 제34조 제1항 제15호 적용하여 등록거절(2013다84568).

(기능성 심사기준 예시) 기능 수행에 있어 본질적인 경우, 이용 과정에서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품질·가격에 영향을 주어 경쟁에서 이점을 주는 경우 기능성 인정된다. 심사관은 출원된 입체적 형상 등이 기능성이 있는지 판단함에 있어 다음 네가지 요건을 모두 고려해야 하고, 하나 이상의 사항에서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본호를 적용하여 거절이유통지를 하여야 한다.

- (i) 입체적 형상 등과 관련된 특허출원, 실용신안등록출원, 특허권 및 실용신안권의 존재 여부
- (ii) 입체적 형상 등이 제공하는 실용적인 이점에 대한 광고·홍보·설명의 존재 여부
- (iii) 동일한 기능을 가진 대체가능한 입체적 형상 등의 존재 여부
- (iv) 대체가능한 입체적 형상 등의 생산 용이성 및 경제성

(상품 포장의 기능) 상품의 기능만이 아니라 상품의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꼭 필요한 것도 기능성에 해당한다. 예컨대 상품 포장의 입체적 형상 등이 출원되었을 경우 상품 자체의 기능과는 별개로 포장의 기능(상품 보호, 취급상 편리 제공, 상품 정보 표시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입체적 형상 등의 특징이 포장의 기능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식별력과 구분) 입체적 형상 등이 기능적인 경우 보통의 상품 형상 등에 불과하여 식별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수 있을 수 있으나 기능성과 식별력은 구분되는 개념으로 심사관은 기능성 유무와 식별력 판단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출원된 입체적 형상 등이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있거나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가지는 경우라도 심사관은 법 제34조 제1항 제15호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2013다84568 판결).

3. 색채만으로 된 상표

가. 출원절차

(상표유형) 출원서 '상표 유형'란에 색채만으로 된 상표임 표시.

(상표견본) 단일한 색채 또는 색채의 조합을 채운 도면 또는 사진으로 제출.

(상표의 설명) 상표에 대한 설명 필수. 상표의 설명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방식심사를 통해 방식위반으로 보정명령(제39조). 만약 방식심사시 하자가 누락된 경우는 제2조 제1항 상표 정의 규정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

나. 식별력 심사

색채는 본질적으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므로 색채만으로 된 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하지 못하면 제33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 적용하여 거절하거나 색채만으로 된 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 제3호 적용.

다. 기능성 심사

색채만으로 된 상표가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상표의 기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능성이 있는 경우 제34조 제1항 제15호를 적용하여 거절. 해당 색채가 통상적으로 가지는 의미(예시: 노란색 → 경고)를 감안할 때, 그러한 의미가 상품의 기능을 수행함에 있어 본질적인 경우 해당 색채는 기능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음. 예컨대 소화기에 사용되는 빨간색은 기능성을 가지는 색채로 볼 수 있음.

4. 소리상표

가. 출원절차

(상표유형) 출원서 '상표 유형'란에 소리상표임 표시.

(상표견본) 제출할 것이 없음.

(상표의 설명) 상표에 대한 설명 필수. 상표의 설명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방식심사를 통해 방식위반으로 보정명령(제39조). 만약 방식심사시 하자가 누락된 경우는 제2조 제1항 상표 정의 규정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

(시각적 표현) 소리상표를 문자·숫자·기호·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시각적 표현 필수. 시각적 표현이 없는 경우 방식심사를 통해 방식위반으로 출원서 반려(시규 제25조 제1항 제10호). 시각적 표현이 소리가 문자·숫자·기호·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는 제2조 제1항 상표 정의 규정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

(소리파일)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소리파일 제출 필수. 소리파일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방식 심사를 통해 방식위반으로 보정명령(제39조). 만약 방식심사시 하자가 누락된 경우는 제2조 제1항 상표 정의 규정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

제출되는 서류 등의 종류	관련조항	필수 여부
견본	규칙 제28조 제2항 제1호	없음
설명	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필수
시각적 표현	규칙 제28조 제2항 제3호 (규칙 제25조 제1항 제10호)	필수
소리파일	규칙 제28조 제2항 제4호	필수
악보	규칙 제28조 제5항 제5호	선택

나. 식별력 심사

소리는 본질적으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므로 소리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하지 못하면 제33조 제1항 제6호 또는 제7호 적용하여 거절하거나 소리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 제3호 적용.

다. 기능성 심사

소리상표가 식별력(사용에 의한 식별력 포함)이 있다 하더라도 상표의 기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능성이 있는 경우 제34조 제1항 제15호를 적용하여 거절. 예컨대 맥주병에 사용하는 맥주병의 병뚜껑 따는 소리는 기능성을 가지는 소리로 볼 수 있음.

라. 유사여부 심사

소리상표는 원칙적으로 소리상표 상호간에 상표의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다만, 시각적 표현만으로는 상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소리파일(악보가 제출된 경우에는 악보 포함)을 참고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라. 보정범위

소리,냄새-기타 비시각적 상표는 출원서에 기재된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하되, 보호하고자 하는 표장의 실체는 첨부된 소리파일이나 냄새견본 등이므로 소리파일이나 냄새견본을 참고하여 요지변경 여부를 판단한다.

5. 냄새상표

가. 출원절차

(상표유형) 출원서 '상표 유형'란에 냄새상표임 표시.

(상표견본) 제출할 것이 없음.

(상표의 설명) 상표에 대한 설명 필수. 상표의 설명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방식심사를 통해 방식위반으로 보정명령(제39조). 만약 방식심사시 하자가 누락된 경우는 제2조 제1항 상표 정의 규정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

(시각적 표현) 냄새상표를 문자·숫자·기호·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한 시각적 표현 필수. 시각적 표현이 없는 경우 방식심사를 통해 방식위반으로 출원서 반려(시규 제25조 제1항 제10호). 시각적 표현이 냄새가 문자·숫자·기호·도형 또는 그 밖의 방법을 통하여 시각적으로 인식하고 특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표현되지 않은 경우는 제2조 제1항 상표 정의 규정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

(냄새견본) 시각적 표현에 합치하는 냄새견본 제출 필수. 냄새견본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방식심사를 통해 방식위반으로 보정명령(제39조). 만약 방식심사시 하자가 누락된 경우는 제2조 제1항 상표 정의 규정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

제출되는 서류 등의 종류	관련조항	필수 여부
건본	규칙 제28조 제2항 제1호	없음
상표에 대한 설명서	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필수
시각적 표현	규칙 제28조 제1항 제3호	필수
냄새견본(밀폐용기, 패치)	규칙 제28조 제2항 제5호	필수

나. 식별력 심사

냄새는 본질적으로 출처표시로 기능하는 것이 아니므로 냄새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지정상품과 관련하여 제33조 제2항에서 정하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하지 못하면 제33조 제1항 제7호 적용하여 거절하거나 냄새상표가 지정상품의 품질이나 효능, 용도 등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경우에는 제33조 제1항 제3호 적용. 예컨대 타이어에 대해 고무향은 성질표시로 볼 수 있음.

다. 기능성 심사

냄새상표가 식별력(사용에 의한 식별력 포함)이 있다 하더라도 상표의 기능성 여부를 판단하여 기능성이 있는 경우 제34조 제1항 제15호를 적용하여 거절.

라. 유사여부 심사

냄새상표는 원칙적으로 냄새상표 상호간에 상표의 시각적 표현을 기준으로 유사여부를 비교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다만, 시각적 표현만으로는 상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으므로 제출된 냄새견본을 참고하여 유사여부를 판단하도록 한다.

6. 위치상표

가. 출원절차

(상표유형) 출원서 '상표 유형' 란에 그 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임 표시.

(상표견본) 위치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5장 이하의 도면 또는 사진 제출. 상표견본에서

점선으로 상품 전체의 형상을 나타낸 뒤 특정위치의 형상·모양 또는 색채를 나타낸 부분의 외곽만이 실선 등으로 표시되어 있고, 상표 유형이 그밖에 시각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상표로 되어 있으며, 상표 설명란에 위치상표에 대한 설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위치상표로 출원한 것으로 봄.

(상표의 설명) 상표에 대한 설명 필수. 상표의 설명이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 방식심사를 통해 방식위반으로 보정명령(제39조). 만약 방식심사시 하자가 누락된 경우는 제2조 제1항 상표 정의 규정 위반으로 거절이유통지.

(전자적 기록매체) 심사관은 위치상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치상표의 특징을 충분히 나타내는 영상을 수록한 전자적 기록매체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제출되는 서류 등의 종류	관련조항	필수 여부
전본	규칙 제28조 제2항 제1호 (규칙 제29조 제2항 제4호)	필수
상표에 대한 설명서	규칙 제28조 제2항 제2호	필수
전자적 기록매체	규칙 제28조 제5항 제4호	출원인 선택
	규칙 제29조 제3항 제2호	심사관 요구

나. 식별력 심사

특정위치에 부착된 표장은 수요자의 입장에선 상표가 아니라 디자인적 요소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치상표로 등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표장이 수요자들에게 상품의 출처표시로 인식된다는 것을 입증할 필요 있음. 즉 위치상표로 등록받기 위해서는 제33조 제2항의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획득할 필요 있음.

다. 기능성 심사

위치상표로 보호받고자 하는 부분이 입체적 형상 또는 색채이고 그 입체적 형상 또는 색채가 지정상품의 기능을 확보하는데 불가결한 요소인 경우 제33조 제2항에 의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입증하였다 하여도 제34조 제1항 제15호 적용하여 거절.



라. 2010후2339 판례

(의의) ‘기호·문자·도형 각각 또는 그 결합이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을 이루고, 이러한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이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는 것에 의하여 자타상품을 식별하게 되는 표장’도 상표의 한 가지로서 인정될 수 있다(이러한 표장을 이하 ‘위치상표’라고 한다).

(위치 특정방법) 위치상표에서는 지정상품에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부착되는 특정 위치를 설명하기 위하여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을 필요로 하게 된다. 이때 표장의 전체적인 구성, 표장의 각 부분에 사용된 선의 종류, 지정상품의 종류 및 그 특성 등에 비추어 출원인의 의사가 지정상품의 형상을 표시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설명의 의미를 부여한 것뿐임을

쉽게 알 수 있는 한 이 부분은 위치상표의 표장 자체의 외형을 이루는 도형이 아니라고 파악하여야 한다. 그에 있어서는 출원인이 심사과정 중에 특허청 심사관에게 위와 같은 의사를 의견제출 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 등의 방법으로 밝힌 바가 있는지 등의 사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위 지정상품의 형상 표시는 상표권이 행사되지 아니하는 부분임을 미리 밝히는 권리불요구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사유는 위와 같은 위치상표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다.

(식별력) 위치상표는 비록 일정한 형상이나 모양 등이 그 자체로는 식별력을 가지지 아니하더라도 지정상품의 특정 위치에 부착되어 사용됨으로써 당해 상품에 대한 거래자 및 수요자 대다수에게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것으로 인정받아 상표로서 등록될 수 있다.

7. 단체표장

가. 의의

(제2조 제1항 제3호)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함. (상표 및 업무표장과의 대비) 단체표장은 법인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그의 감독하에 있는 단체원이 그들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이라는 점에서 권리자 스스로의 직접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상표와 구별되고, 영리성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업무표장과도 다름.

(제한) 단체표장은 다수의 단체원이 다 같이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점에서 상품의 출처 혼동이나 품질의 오인을 방지하기 위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할 자의 범위와 조건을 요구하는 등 제한을 두고 있음.

(제119조 제1항 제7호 취소사유)

i) 소속단체원이 정관의 규정에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타인에게 사용하게 한 경우 또는 단체의 정관에 위반하여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품질의 오인 또는 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로서 단체표장권자가 소속단체원의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한 경우 ii) 정관을 변경함으로써 품질의 오인 또는 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iii) 제3자가 단체표장을 사용함으로써 품질의 오인 또는 출처의 혼동을 생기게 하였음에도 단체표장권자가 고의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경우

나. 출원인 적격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의 경우에는 그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으로 한정한다)이 자기의 단체표장을 등록받을 수 있음(제3조 제2항). 단체표장은 단체 또는 소속단체원의 영업에 관한 상품에 사용하기 위한 표장이기 때문에 소속단체원을 가진 법인적 있는 단체만 등록받을 수 있으며, 자연인(개인)은 등록받을 수 없음. 단체표장의 출원인이 개인(자연인)인 경우 제3조 제2항 적용 거절이유통지.

다. 출원절차

(정관) 단체표장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을 정한 정관을 제출해야 함(제36조 제3항). 정관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영 제3조).

- i) 단체표장을 사용하는 소속 단체원의 가입자격·가입조건 및 탈퇴 등에 관한 사항
- ii) 단체표장의 사용조건과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에 관한 사항
- iii) 그 밖에 단체표장의 사용에 관한 사항

심사관은 단체표장등록출원서에 첨부된 정관에 영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전부 또는 일부의 기재가 없는 경우 제54조 제6호를 이유로 거절이유통지. 출원인은 보정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수정정관을 제출하여 거절이유를 해소할 수 있음.

라. 이전 제한 등

(이전) 단체표장등록출원 또는 단체표장권은 법인 합병의 경우에 한하여 특허청장의 허가를 받아 이전할 수 있음(제48조 제7항, 제93조 제6항). 출원이 이전 제한규정에 위반한 경우는 거절이유 및 무효사유에 해당하며(제54조 제3호, 제117조 제1항 제1호), 권리가 이전 제한 규정에 위반한 경우에는 취소사유에 해당함(제119조 제1항 제4호).

(사용권) 단체표장권에 대하여는 전용사용권이나 통상사용권 설정 불가(제95조 제2항, 제97조 제55항).

(질권) 단체표장권에 대하여는 질권 설정 불가(제93조 제8항).

8. 지리적표시

가. 의의

(제2조 제1항 제4호) 지리적 표시란 상품의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식별하는) 표시를 말함. 이 경우 특정 품질·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 중 어느 하나만 특정 지역에서 연유하면 족하다고 보며, 기후·토양·지형 등의 자연적 조건 외에 전통적인 생산비법 등 인적 조건에 의하여 획득되는 경우도 해당됨(심사기준).

(제2조 제1항 제6호) 단체표장이란 상품을 생산·제조·가공·**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으로서 서비스 제공과도 연관 있을 수 있음에 반해,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자가 공동으로 설립한 법인이 직접 사용하거나 그 소속 단체원에게 사용하게 하기 위한 표장을 말하며, 상품의 판매나 서비스와는 관련 없다.

(제2조 제1항 제8호)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이란 지리적 표시를 증명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타인의 상품에 대하여 그 상품이 정해진 지리적 특성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하는 표장을 말함.

(의의 심사) 지리적 표시의 정의에 합치하는지 여부의 판단시에는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의견과 함께 농산물, 수산물 및 그 가공품 중「농수산물 품질관리법」상의 지리적 표시 등록대상 품목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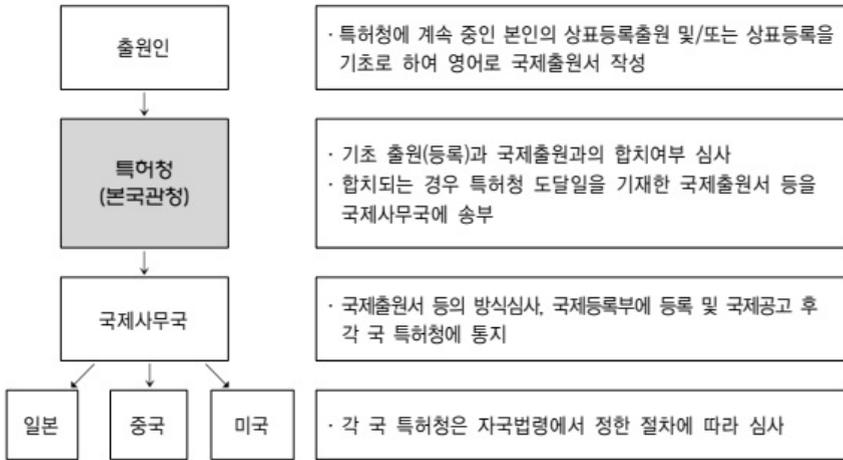
13 국제출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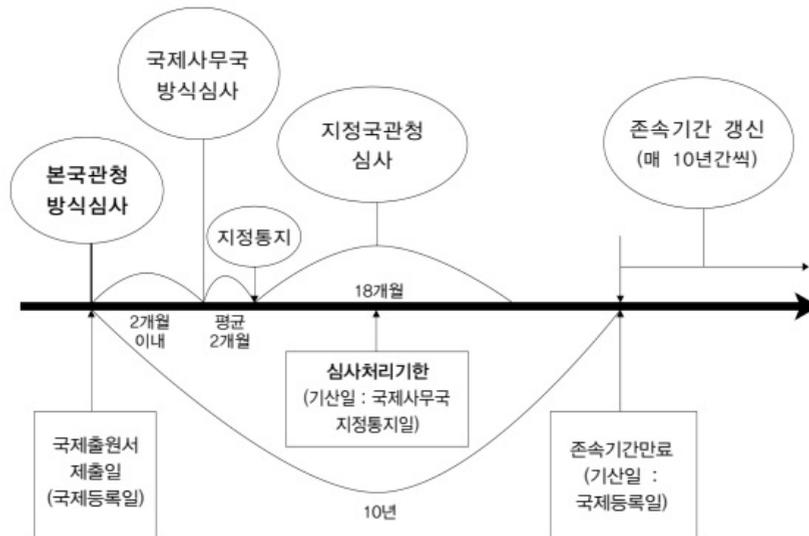
1. 개요

국제출원 개괄 → 본국관청 절차 → 국제사무국 절차 → 지정국관청 절차

2. 국제출원 개괄

① 본국관청에 출원·등록되어 있는 상표를 기초로 ② 지정국 지정하여 ③ 본국관청 경유해 국제사무국에 국제출원 → ④ 국제사무국은 국제등록부에 등록된 후 각 지정국에 이를 통지(영역확장의 통지) → ⑤ 통지 받은 각 지정국관청은 거절이유를 발견한 경우 1년(또는 18개월, 대한민국은 18개월) 이내 국제사무국에 그 이유를 통지, 위 기간 내 거절이유통지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당해 국가에서 보호 → ⑥ 지정국관청에서 등록결정 받고 등록된 경우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국제등록일 후 10년이 되는 날까지 상표권 존속, 국제사무국에 국제등록 존속기간 갱신 통해 10년씩 갱신 가능.





3. 본국관청 절차(제167조 내지 제179조)

가. 국제출원

(출원인 적격) 대한민국 국민 또는 재내자, 공동출원의 경우 ① 모두 내국인 또는 재내자임과 동시에 ② 기초 출원·등록을 공유하고 있을 것.

(언어) 영어(시규 제76조).

(상표) 본국관청에 계속 중인 기초 출원·등록과 동일한 상표일 것.

(지정상품) 기초 출원·등록 지정상품과 동일하거나 그 범위 이내일 것.

(수수료 미납) 본국관청에 대한 수수료 미납시(국제사무국에 대한 수수료가 아님) 보정명령 후 무효 可(제176조, 제177조).

(출원일) (국제출원) ① 국제등록일 또는 사후지정일이 출원일. ② 본국관청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에 제출된 국제출원은 국제출원서를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국제사무국이 접수했을 때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 ③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후 국제사무국이 국제출원서 접수하면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국제등록일.

(사후지정) ④ 국제출원은 본국관청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에 할 수 있는 반면, 사후지정은 본국관청 경유하여 국제사무국에 하거나, 국제사무국에 직접 할 수도 있음. ⑤ 국제사무국에 직접한 경우 사후지정신청서를 국제사무국이 접수한 날이 사후지정일. ⑥ 본국관청 경유해 국제사무국에 한 경우 사후지정신청서를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부터 2개월 이내 국제사무국이 접수했을 때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이 사후지정일. ⑦ 본국관청이 접수한 날부터